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10-10

정책-03-2020-026-1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개정 사유	쪽수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리	• 금연구역 지정 방법 (예시) 	• 금연구역 지정 방법 (예시) 	간접흡연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p.4
	•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5.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시행일 : 2021. 12. 4.] 〈중략〉	법령 개정	p.7
	• 흡연실 설치 방법 ①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또한,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됨 ※ 영업 목적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자를 위한 의자 등은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방법 ①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또한,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됨 ※ 삭제	업무 혼선 방지	p.10
	• 〈신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수록	업무 혼선 방지	p.19
	• 〈신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삽입	업무 혼선 방지	p.20

구분	2020년	2021년	개정 사유	쪽수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1조(대표자) 〈좌동〉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업무 혼선 방지	p.23
	• 금연구역 지정안내 표지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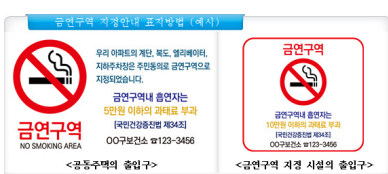 	• 금연구역 지정안내 표지방법(예시) 	업무 혼선 방지	p.25
금연 구역 지도 점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좌동〉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업무 혼선 방지	p.36
	• 〈신규〉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관련 내용 수록	법령 개정	p.37

구분	2020년	2021년	개정 사유	쪽수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 흡연 과태료 감면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수록	법령 개정	p.43
금연 지도원 제도 운영	• 금연지도원 교육	• 금연지도원 관련 교육	업무 혼선 방지	p.53
	• 〈신규〉	• 금연지도원 공모절차 삽입	정부 합동 감사 결과	p.54
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확인(단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확인(단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되며 동기간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이수 시 50% 또는 100% 감면됨을 안내	법령 개정	p.57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중략〉 있습니다." - "또는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까지 저희 부서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이수하실 경우 50% 또는 10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p.58
금연 구역 법령 해설집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제16호) - 〈중략〉 - 또한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지하, 지상)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제16호) - 〈중략〉 - 또한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및 건축물 내부의 지상에 위치한 주차장(예: 건물 내 2층 등에 위치, 필로티 또는 옥상에 위치등)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지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설치한 지상주차장(건물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주차장)은 미포함됩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p.65

구분	2020년	2021년	개정 사유	쪽수
자주 묻는 질문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신규〉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군대, KTX 역사, 지자체 공사·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사회적기업·단체 입주 시설, 문화회관, 나눔방, 협동조합),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도 청사에 해당 여부		p.68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 A.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듦(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설치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식당,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불법 도로점 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봐야 함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 A.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듦(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설치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휴게음식점 등록이 되어 있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불법 도로 점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봐야 함		p.69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신규〉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 포함 여부		p.69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신규〉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의 차양막, 비가림막 등의 하부의 금연구역 해당 여부		p.70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신규〉	• 금연구역 지정 관련 - Q.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의 기준		p.71
	• 흡연실의 설치 - Q. 흡연실(흡연부스)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시설(자판기 등) 설치가능 여부 - A.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시설은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 다만, 영업 목적이 아닌 편의를 위한 설비(테이블, 의자 등)는 최소한도로 설치가능	• 흡연실의 설치 - Q. 흡연실(흡연부스)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시설(자판기 등) 설치가능 여부 - A.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시설은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의자,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	업무 혼선 방지	p.71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개정
사유</th><th>쪽수</th></tr>
<tr><td></td><td>• 금연지도 · 단속
- Q.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td><td>• 금연지도 · 단속
- Q.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u>전화번호</u>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td><td>업무
효율성
제고</td><td>p.71</td></tr>
<tr><td>금연
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td><td>•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td>•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 <u>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u>
-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이하 생략〉</td><td>감사원
권고</td><td>p.78</td></tr>
<tr><td rowspan="2">금연
구역
지도
·
단속
실적
보고서
(예시)</td><td>• 월간 추진 계획
- 월간 세부 추진 내용
<table><tr><th>구 분</th><th>중점 대상</th></tr><tr><td>계</td><td></td></tr><tr><td>1월</td><td>음식점 흡연석 및 흡연실</td></tr></table></td><td>• 월간 추진 계획
- 월간 세부 추진 내용
<table><tr><th>구 분</th><th>중점 대상</th></tr><tr><td>계</td><td></td></tr><tr><td>1월</td><td><u>음식점 및 흡연실</u></td></tr></table></td><td>업무
효율성
제고</td><td>p.91</td></tr>
<tr><td>• 조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table><tr><th>구분</th></tr><tr><td>총계</td></tr><tr><td>(예시) 도시공원</td></tr></table></td><td>• 조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table><tr><th>구분</th></tr><tr><td>총계</td></tr><tr><td>(예시) <u>공원</u></td></tr></table></td><td>업무
효율성
제고</td><td>p.93</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개정 사유</th><th>쪽수</th></tr>
<tr><td></td><td>• 위반사항 조치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 (제9조제9항 제1호 및 제2호)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금연시설 지정위반</th><th rowspan="2">실외흡연구역 지정현황*</th><th colspan="2">흡연부스 설치현황</th><th rowspan="2">미설치</th><th colspan="4">흡연실 시설기준위반</th></tr><tr><th rowspan="2">주의·경고</th><th colspan="2">과태료</th><th rowspan="2">고발</th><th rowspan="2">실내</th><th rowspan="2">실외</th><th rowspan="2">주의·경고</th><th colspan="2">과태료</th><th rowspan="2">고발</th></tr><tr><th>건수</th><th>금액</th></tr><tr><td>공공이용시설</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
** (실외 흡연구역 지정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외 흡연구역에 한함
※ 시설 현황 양식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조례시설 시설종류별로 작성</td><td>• 위반사항 조치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 (제9조제9항 제1호 및 제2호)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금연시설 지정위반</th><th colspan="6">흡연실</th><th rowspan="3">미설치</th><th colspan="4">흡연실 시설기준위반</th></tr><tr><th colspan="2">실외현황</th><th rowspan="2">실외 흡연구역 개소수</th><th rowspan="2">흡연부스 개소수</th><th colspan="2" rowspan="2">흡연부스 설치현황</th><th rowspan="2">주의·경고</th><th colspan="2">과태료</th><th rowspan="2">고발</th></tr><tr><th rowspan="2">주의·경고</th><th colspan="2">과태료</th><th rowspan="2">고발</th><th rowspan="2">실치</th><th rowspan="2">미설치</th><th rowspan="2">실내</th><th rowspan="2">실외</th><th rowspan="2">건수</th><th rowspan="2">금액</th></tr><tr><th>건수</th><th>금액</th></tr><tr><td>공공이용시설</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
<u>**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u>
※ 시설 현황 양식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조례시설 시설종류별로 작성</td><td>업무 혼선 방지</td><td>p.94</td></tr>
<tr><td></td><td>• 금연구역 외 흡연구역 현황*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 (제9조제9항 제1호 및 제2호)
<table><tr><th>구분</th><th>실외흡연구역 지정 현황</th><th>실외흡연부스 설치현황</th></tr><tr><td></td><td></td><td></td></tr></table>
* (금연구역 외 흡연구역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외 흡연구역에 한함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td><td>• 금연구역 외 흡연구역 현황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 (제9조제9항 제1호 및 제2호)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흡연실</th></tr><tr><th colspan="2">실외현황</th><th rowspan="2">실외 흡연구역 개소수</th><th colspan="2" rowspan="2">흡연부스 개소수</th></tr><tr><th>실치</th><th>미설치</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
<u>**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u></td><td>업무 혼선 방지</td><td>p.95</td></tr>
</table>

CONTENTS

Ⅰ.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 1

Ⅱ.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4

Ⅲ. 금연구역 지도·점검 ····· 33

Ⅳ.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 51

Ⅴ. 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 55

붙임 ····· 61

붙임 1.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 63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 68

붙임 3.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 ····· 75

붙임 4.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 76

양식 ····· 89

Ⅰ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1 추진 배경

-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추진함

  ※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 금연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준수 및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추진함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1) 간접흡연의 폐해

-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으로 나뉨.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담배연기의 독성물질, 특히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은 흡연자들이 흡입하고 내뱉는 담배연기인 주류연보다 부류연에서 2~3배 정도 더 많음.
- 1986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 발간 이후 간접흡연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으며, 치명적인 건강위해요인으로 비흡연자들에게도 폐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주류연) 흡연자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담배연기
  * (부류연)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등 주류연 외의 담배연기

2)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 이행가이드라인

- FCTC 제8조 가이드라인은 담배연기 노출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기 때문에 환기나, 공기 여과,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등은 담배연기로부터의 노출에 따른 폐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과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야 함을 명시함.
- 영국,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등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 중이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한국과 같이 실내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일부 실내 공간의 흡연구역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가이드라인 제27호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 '기타'(**실외 또는 그와 유사한 실외장소**) 공공장소에서도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 가이드라인 제37호에서는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정책 및 제도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점검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그러나 동시에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기전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2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9항(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3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신설 법정 금연구역
-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 흡연자 지도·단속 등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실태 점검
- 실외 흡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금연구역 지정 및 보고
  - 실외 흡연구역 지정 기준(위치, 표시, 개수, 시설물 설치 등) 점검 및 관리

4 2019 ~ 2021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 사항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 제정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 금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을 제정함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20.3.17. 시행)

-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자격기준을 완화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20.3.17.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신설)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20.6.4.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신설)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Ⅱ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 모든 실내 사업장, 실내장소, 대중교통에서 금연 원칙(WHO FCTC 제8조)

2.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

-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
  - 동법 제9조제4항 각호에서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의무 적용 대상 시설을 일일이 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 표지 설치 등) 부여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의 관리자 등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 표지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자체 제작하되, 필요 시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금연구역 지정 방법 (예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제1~5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금연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시행규칙 별표2)

◉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방법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함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지자체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자체장이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음

◉ 금연구역 안내 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연구역 표지 미비사항에 대해 계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관리자 등은 관련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4.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법 제9조 제9항)

- 시정명령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해당시설의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표지 설치 사항 등)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 시정명령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 9항

제9조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취지
  - 시설 관리자 등에 금연구역 지정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여,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시정명령 방법
  -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확인서는 붙임 양식 참조)

5.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령 별표 5)

- 과태료 부과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21.12.4. 시행)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이하 생략)

- 과태료 금액
  - 시정명령 이후에도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이상 위반 시 500만원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함

6. 흡연과태료 부과

-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부과함
-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흡연실 설치·운영 (시행규칙 별표2)

- 흡연실 설치 주체 :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
  - 시설의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 설치 위치

①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등 : 실내 설치 불가

- 해당 시설들은 실내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없고, 옥상이나 실외(건물과 시설 경계 사이 실외 공간 포함)에만 설치 가능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이 경우 실외에 흡연실(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② ①을 제외한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 : 실내 설치 가능

- 손님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실내 설치가 가능하나 가급적 실외에 설치 권장
- 특히,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는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건물과 시설 경계 사이 실외공간*에 설치 권장

  * 이 경우 역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

◉ 흡연실 표지 의무

- 시설 관리자 등은 비흡연자가 무의식적으로 흡연실로 들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그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담배회사 또는 담배업계와 관련된 로고나 회사명칭 등을 흡연실 내·외부에 표기해서는 안 됨 (이미 표기 중인 흡연실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삭제 필요)

- 금연표지를 함께 세울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금연상담전화 1544-9030 표기 권고)

흡연실 설치 및 표지방법 (예시)

흡연실 설치 방법

①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규모·특성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실내 흡연구역 면적이 금연구역 면적보다 클 수는 없음

  ※ 베란다, 테라스, 필로티 방식 구조물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시설 공용공간으로 보며 위치 및 구조 등 입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공용공간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

- 실내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하며,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계

- 또한,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됨

② 실외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을 설치·지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外 금연시설의 관리자 등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시

• 실외에 흡연실(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해야 함

•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방자치단체 外 금연시설의 관리자 등이 실외 흡연구역 지정 시 가급적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함

흡연실 설치 및 표지방법 (예시)

- 지방자치단체가 실외 흡연구역 지정 시

•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해야 함 (13쪽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법 제9조제9항제2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금연구역 관련 홍보물 안내(금연구역 스티커, 포스터, 안내문 등)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 : 뉴스룸 - 금연자료실 - 금연구역홍보물

2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2. 금연구역 지정 의무

-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주변 구역, 버스정류장 주변 구역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대해 지정 가능

    ※ 편의상 공중이용시설과 대비하여 주로 실외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실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역 단위로 지정 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제9조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기준에 맞춰 가급적 통일된 양식 권장

4. 흡연과태료 부과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만원 이상 수준으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5. 흡연구역 지정·운영

- 실외장소의 경우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지정 및 운영

3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

1. 기본원칙

- 본 권고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외 흡연구역에 대하여 적용함
- 본 권고기준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 폐기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연기 등)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길거리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흡연구역 지정이 정부의 금연정책 후퇴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정개수, 지정규모 등에 신중을 기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함

2. 실외 흡연구역 지정 기준

1) 위치

-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 다만, 개별 입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0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지정할 수 있음
- 건물 옥상의 경우 공조시설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화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시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
- 유치원·병의원·학교 등의 인근과 주거밀집지역은 실외 흡연가능 구역의 지정을 최소화해야 함

2) 실외 흡연가능구역의 표시

- 실외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및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해야 하며, 실외 흡연구역의 경계는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필요시 흡연자를 실외 흡연구역으로 안내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 시설의 색깔 및 디자인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규모 및 지정 개수

- 실외 흡연구역 1개소의 면적과 개수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의 정도, 유동인구 및 흡연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 간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정. 다만, 개별 입지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지정할 수 있음

4) 시설물의 설치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
- 실외 흡연구역의 입지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붕 및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음. 흡연가능구역 내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벽면 4면 면적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자연환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붕 설치 시 지붕 면적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50% 초과 여부는 지붕이 덮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실외 흡연구역에는 재떨이, 쓰레기통 등 청결을 위한 시설과 금연 캠페인 홍보물·국가금연지원 서비스 홍보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자판기, 의자, 테이블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담배제품, 담배회사 및 담배 관련 업종의 이름이나 로고를 연상시키는 시설물, 홍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됨

5) 실외 흡연구역 지정 및 관리주체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적으로 실외 흡연구역의 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담배회사 및 담배 관련 사업자에게 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하여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지원 받아서는 안 됨
- 실외 흡연구역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위험 및 청소 인력의 간접흡연 문제를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음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하’ 기준 준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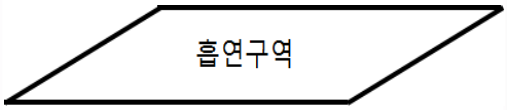

완전 개방형

50% 이하 차단(벽면 4면 중 1면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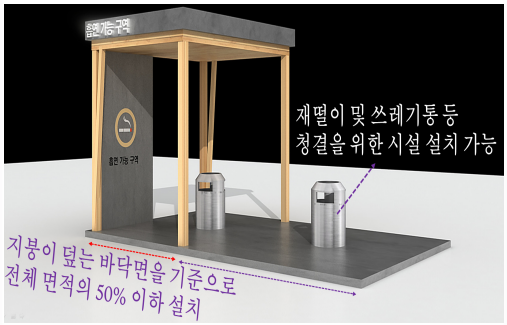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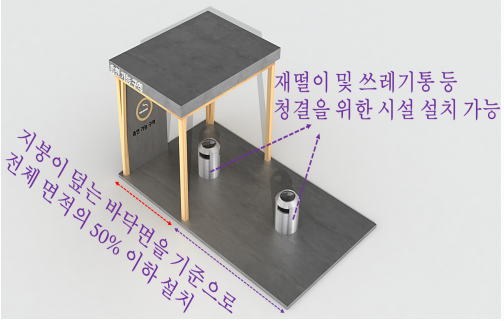

50% 이하 차단(벽면 4면 중 1면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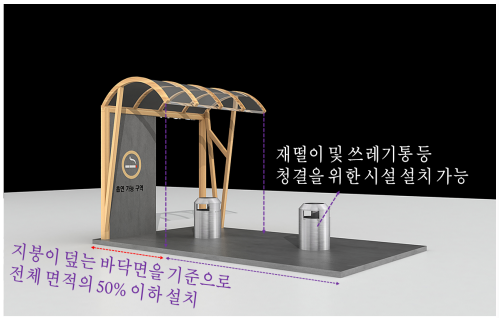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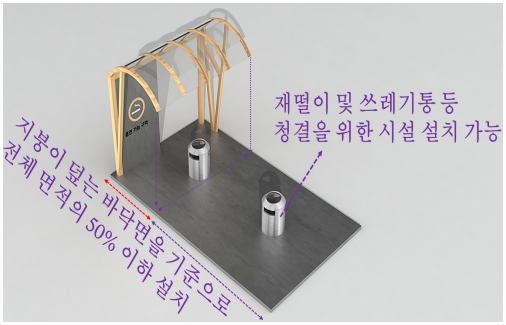

50% 이하 차단(벽면 4면 중 1면 차단)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하' 기준 미준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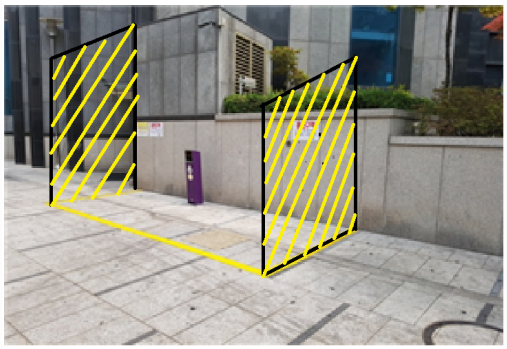

50% 이상 차단막 설치(3/4 차단)

50% 이상 차단막 설치

밀폐형 흡연부스

* (출처) 영국 Leicester City Council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지붕이 있는 경우(지붕의 50% 초과)

4 신설 법정 금연구역

1.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제도 개요 (법 제9조제5항)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제9조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지정 절차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

- (법정 서식)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를 작성·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시설	공동주택명							
	소 재 지				면 적(㎡)			
	거주세대		개동 /		세대			
금연구역지정	① 복 도 [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		④ 지하주차장 [ ]	
주민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① 복 도 [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		④ 지하주차장 [ ]	
주민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공 고
신 청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 ] 지정 / [ ] 해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_____

(주 소) _____

□ 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OOOO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세대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호수	성 명	생년월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세대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 명)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자투표) 위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우선 권장하며 그 외 전자투표를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 결과(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유의사항

  •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선관위 전자투표 이용방법은 '기타 참고사항'(26쪽) 참조

② 시·군·구에 지정 신청

- (신청주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시·군·구(보건소)에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③ 시·군·구에서 확인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 (동의입증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표결과에 지정 장소별 구분 동의 여부 확인

• **(세대주 명부)** 신청자를 통해 받되, 주민센터 협조(주민등록정보시스템)를 통해 받은 자료로 최종 확인

• **(4곳 장소)** 특히,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의 각 장소별로 세대주 동의가 2분의 1이상인지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도면 관련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 (예시 : 평면도 등)

※ (내역에 관한 서류) 위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요구 가능

④ 요건 충족 시 시·군·구는 지정 의무 (시행규칙 제6조의3)

- (지정 공고) 시·군·구 및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고 사항)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지정 시행일, 지정 범위(4곳 장소 중 해당 지정장소)
- (표지 설치)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는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표지 또는 스티커를 1개 이상 부착
- (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가급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양식에 맞춤)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 시 설치

금연구역 지정안내 표지방법 (예시)

금연구역
NO SMOKING AREA

우리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주민동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OO구보건소 ☎123-3456

〈공동주택의 출입구〉

기타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6조의2)

① 선관위 전자투표 이용 방법

- (개요)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 관리와 투·개표를 장소·시간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관련규정) 「공동주택법」 제22조 및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규정)
- (인터넷 주소) : www.kvoting.go.kr(온라인 전자투표지원센터)
- (이용절차) 투표 신청 → 개설 → 진행 → 개표 및 결과 공고

① 투표 신청	② 투표 개설	③ 투표 진행	④ 결과 공고
온라인투표서비스 접속 및 신청(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서 작성)	명부 및 안건정보 입력	투표율 확인 및 투표참여 문자서비스	투표종료, 개표 및 선거결과 공고

- (유의사항)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온라인 투표 현황에서 세대주 여부 확인 불가
- (투표방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경우 안건투표, 찬반투표 선택하여 신청 장소별 실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수수료) 선거인당 500원 ~ 700원 정도
- (활용효과) 오프라인 현장투표 시 발생하는 시간·장소적 제약 극복, 투·개표 절차 및 관리의 편의성, 정확성, 투명성 확보
- 문의처
  - 서비스 이용 관련 : 지역별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02-503-7710)
  - 기술지원 관련 : 온라인투표시스템 업무지원센터(☎070-7791-1100)

선관위 전자투표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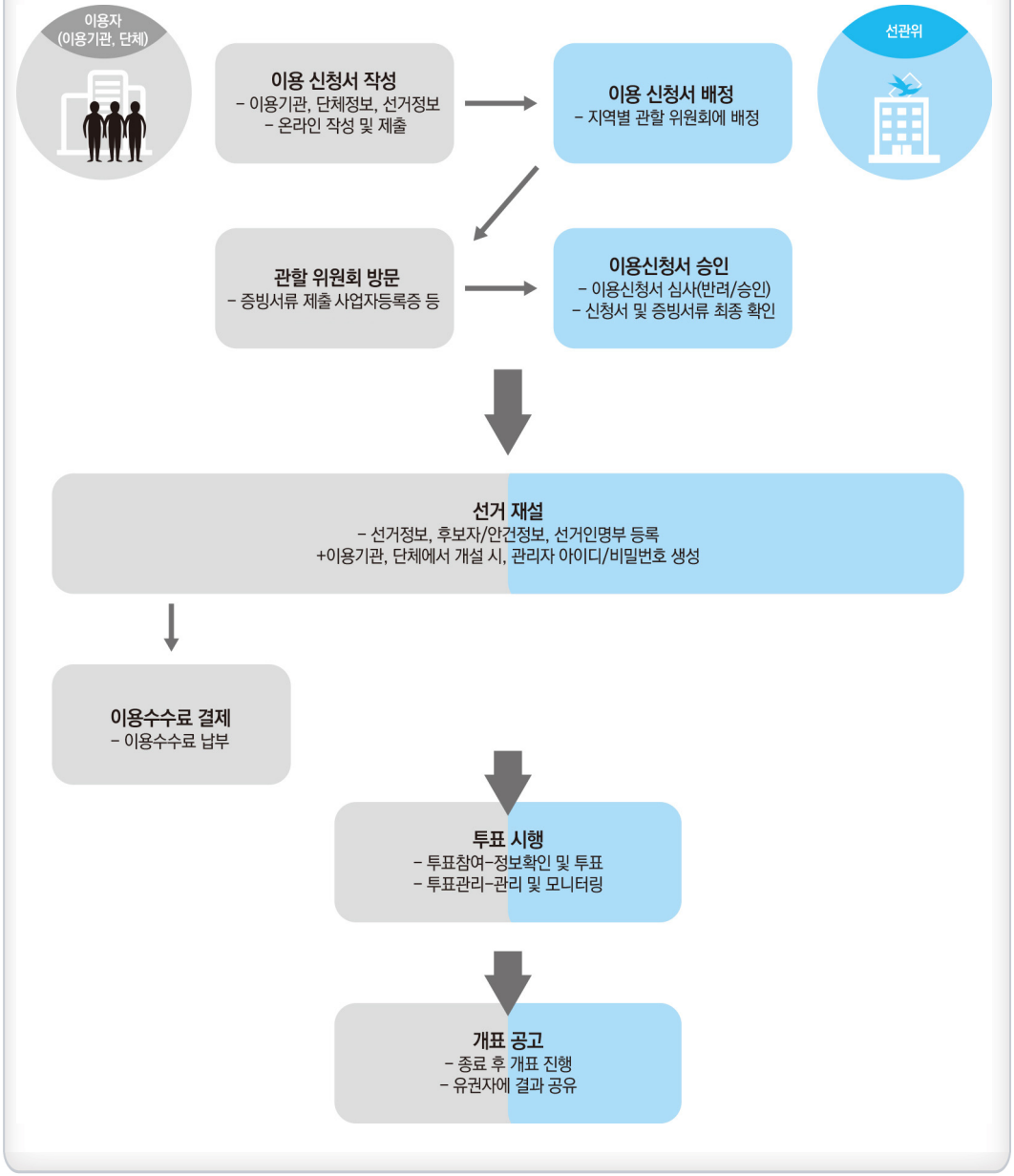

②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확인 방법

-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소에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파트에 대한 세대주 명부를 공문 등으로 협조 요청

- 협조 공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공동주택명, 지번 포함

• (법적근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검색 시 필수 입력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근거로 활용가능

• (유의사항) 공동주택명만으로 검색 시 일부 세대주가 누락될 수 있어 반드시 지번을 명시하고, 검색 시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별 명부를 출력하여 보건소로 회신

③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상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규정사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는 추가 징구하지 않아도 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규정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

제도 개요 (법 제9조제6항)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의무지정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9조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설경계기준

① 대지를 포함한 단독건물인 경우

- 유치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놀이터 등 부속시설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 및 제9호에 의거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병설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인 경우 해당 건물(놀이터 등 전용부속시설 포함)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7호에 의거 교사(해당 건물)만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함

②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다만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해당층 사용부분과 주출입구를 달리하고 내부벽면이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사용호 주출입구 이용범위로 한정

    * (예시) 1, 2호와 3, 4호 라인이 출입구를 달리하는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사용층과 바로 위층은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구역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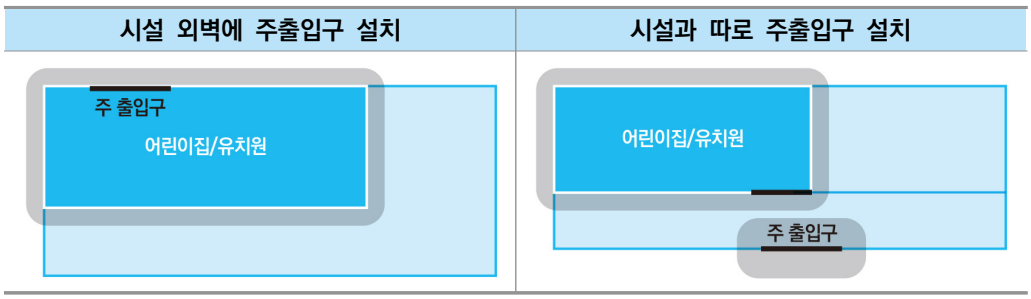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해당 층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시설 경계 기준은 해당 층 바닥면이 접한 건물 외벽(C지점)으로부터 대지면과 접하는 지점(C → A)이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로써 이 경우 건물 외벽 경계선(B)부터 A지점까지가 금연구역이 된다.

* (1개층 3m 가정 시 A-B거리) 2층 10미터, 3층 8미터, 4층 5미터 적용, 5층은 주출입구 주변만 적용

* (예시) 3층 위치 어린이집 : 주출입구 주변 10미터 + 주출입구 외 건물주변 8미터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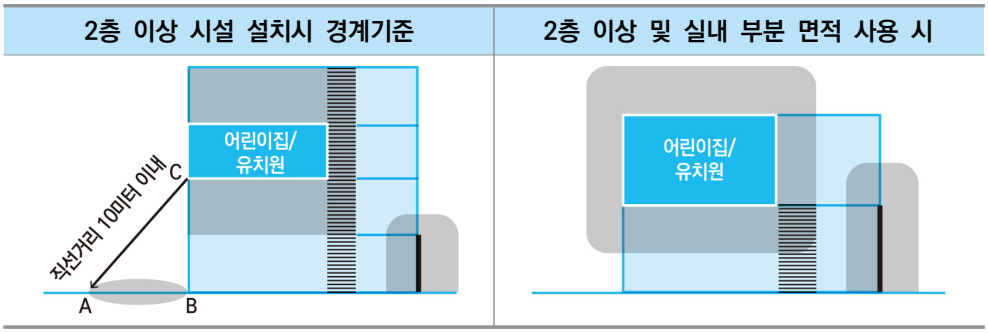

-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범위
  - 도로법에 의한 보도(步道) 및 차도, 공개공지(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제외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 실측, 건축 도면 등을 활용하여 측정(직선거리)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보도(步道), 기둥 등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안내 리플렛,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주변을 이미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이미 조례로 유치원 주변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범위에서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흡연 과태료 역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10만원)
  - 10미터 이상 50미터까지 공간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이 그대로 유지됨. 다만, 이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조례에 따른 흡연 과태료가 부과됨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을 기준으로 10미터 이상 범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례인 경우 10미터 이상 범위에서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

Ⅲ 금연구역 지도·점검

1 지도 · 점검 계획 수립

◎ 기본 관리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 광역)은 관내 금연구역 지정 현황(공중이용시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등)을 정기적(1월, 7월)으로 파악해야 함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절차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도 점검방향 및 점검목표 등 제시

- 시·도지사는 합동 점검 일정 수립 전,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 중점 방향등을 설정하여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
-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도·단속 방향 제시
- 점검 계획에는 시·군·구의 합동 점검 일정을 반드시 안내(상반기, 하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정기 점검)

  ※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
- 각 관할 금연구역 대비 지도 점검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적 지도 단속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 :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주말 중 단속

◎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도단속 방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 계획수립 시 금연구역 현황 분석을 통해 동원인력 및 운용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가용 가능한 인력 및 향후 인력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중심상가 등 주요건물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관리하고, 업종별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시 단속계획을 지역사회에 사전 고지할 수 있음

- 합동단속은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부서 협조요청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캠페인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금연환경 조성 특화 전략도 포함할 것을 권장

◎ 점검계획 보고

- 각 시·도 지사는 시·군·구의 지도·점검 계획을 취합하여 합동(일제)단속을 포함한 최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금연 지도·단속 요원에 대한 기본교육은 복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을 양식 2에 따라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익월 10일까지 관련 사항을 입력·보고하여야 함

  ※ 매년 1월 15일, 7월 15일은 상·하반기 실적을 종합하여 입력

2 금연환경 조성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자원 등을 연계하여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자체 자체 노력) 사례 발굴, 인센티브
  -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연구역 선포, 협약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실시

    ※ 매년 지자체 금연환경 조성 사업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 공모 실시

    ※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포상 예정(매년 5월 금연의 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해당기관은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 사례집 개발, 사례 발표 등 활동 참여 예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 참여 업소 등에 대해 지도·단속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시민사회 활성화) 금연운동협의체 구성·운영
  - 학계,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 금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연운동협의체 구성·운영(향후 금연지도원과 연계 예정)
  -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지도·단속 지원, 여론 조성 등의 업무 수행

- (교육 강화) 금연전문가 풀 구축·활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관련 전문가에 대한 풀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금연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 금연구역 단속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 과태료 부과업무 적용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
- 위반행위 횟수 계산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 흡연과태료는 가급적 현장 즉시 부과가 원칙으로, 관리자 등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시정명령,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위반 과태료가 주로 해당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자 : 100분의 20범위 이내 경감 가능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범위 이내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장애인의 장애 정도) 참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감면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3개월 이상)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으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일 시(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포함 모든 과태료 체납 해당) 감면제외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가중처벌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1) 금연구역 지정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①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흡연자
- (금액) 10만원(횟수와 무관)

②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지자체장(광역, 기초)
- (대상) 흡연자
- (금액)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단, 너무 낮은 금액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실내 흡연 과태료와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조례 제정 시 최소 5만원 이상 수준으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③ 신설 법정 금연구역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에서 흡연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흡연자
- (금액) 5만원(횟수와 무관)

나.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흡연자
- (금액) 10만원(횟수와 무관)

④ (기타)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가. 설치장소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담배자동판매기 관리자 등(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담배자동판매기 관리자 등(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액) 1차 위반 75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3. 과태료 부과 절차

※ 흡연과태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부과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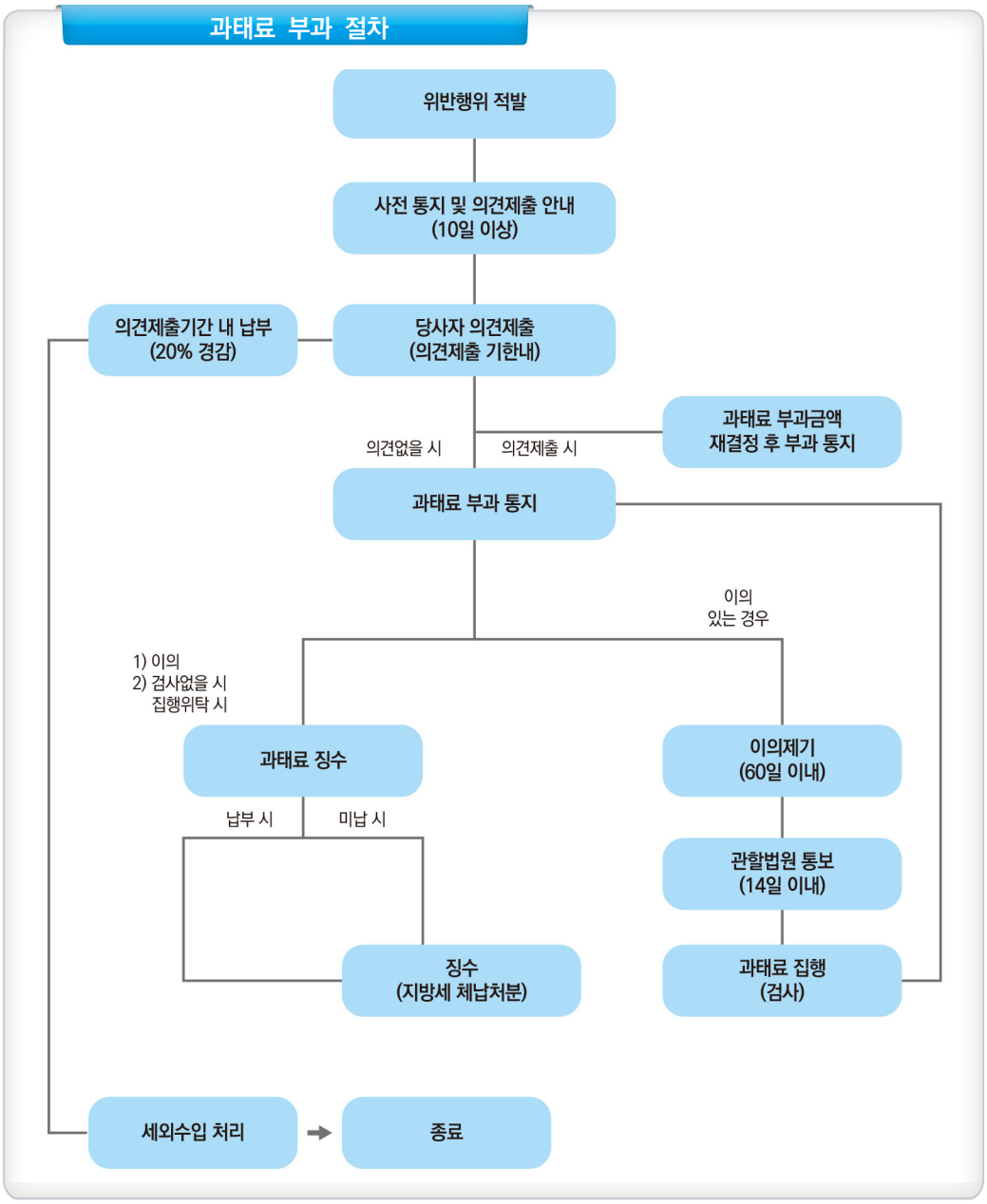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함

-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경감 가능

- 의견 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 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미부과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용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2)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service.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이 상실됨
-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함

  ※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 세부내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가이드라인 참고(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함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3개월 이상) 이용자 : 과태료 면제

	종류	이수기준
교육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집중치료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으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일 시(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포함 모든 과태료 체납 해당) 감면제외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감면 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절차	주체
①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시군·구 → 과태료 부과대상자
②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 → 시·군·구
③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시·군·구 → 과태료 부과대상자
④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자
⑤ 과태료 감면 처분	시·군·구 → 과태료 부과대상자

① (흡연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감면사항) 금연교육(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면제)

- (필수제출사항)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서 수령 또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
  ※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감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에 의한 감면 신청 절대 불가
  ※ 감면 종류(감경(교육) 또는 면제(금연지원 서비스)) 중복신청 및 감면 종류 신청 후 변경 불가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및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② (적발보건소)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

  -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1개월 기준) 접수일~다음 달 접수일 전일 (ex. 1월 2일~2월 1일)

  -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시 유예기간(6개월) 내 이수(3개월 이상 소요)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금연지원 서비스 등록 안내

③ (흡연자) 흡연 과태료 감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 (금연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금연교육 신청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 신청

    * 온라인금연교육센터(https://lms.khealth.or.kr) : 모바일 교육 수강 시에도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로 신청 필요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 등록(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

-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 상담전화 중 1개 서비스 신청

  ※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시 유예기간(6개월) 내 이수(3개월 이상 소요)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금연지원 서비스 등록 필요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등록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클리닉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및 비협조적 참여 시 서비스 중단 및 과태료 감면 불가함을 고지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등록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캠프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 서비스 제공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필요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④ (흡연자) 과태료 감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 (금연교육)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교육 이수
- (금연지원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⑤ (흡연자)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 과태료 감면 신청서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제출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미제출 시 이수여부 상관없이 과태료 감면적용 불가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상담전화 이수 시 이수확인서 제출
  *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 금연치료 참여자의 경우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이수확인서 요청

⑥ 감면 결정(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제출 및 이수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 기한 내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자진납부 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이후 7일까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입력가능하며 이후 입력 불가(해당기간 미입력 건의 경우 이수여부 상관없이 과태료 감면 불가)

흡연 과태료 감면 서식별 제출 시기 및 형태

구분	시기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치료	상담전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출력물(보건소 수령 또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출력)				
감면신청서	과태료 유예기간 내 (자진납부 기간 후)	출력물(보건소 수령 또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출력)				
이수확인서		시스템 자동 연동			문자전송	

과태료 감면 절차 전체 모식도

참여신청 → **서비스 참여** → **감면 적용**

- **(흡연자) 의견제출 기한 내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적발 보건소** 제출
  - 신청서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보건소에 제출
  - *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를 모르는 경우 적발 보건소 문의

- **(흡연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 * 신청 시 감면 프로그램 대상자임을 알려야함
  - **(온라인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오프라인교육)** 인근보건소
    - * 일정 및 장소 등 문의 필요
  - **(서비스기관)** 보건소, 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기관에서 신청

- **(흡연자) 이수확인서 수령**
  - **(교육, 금클, 금캠)** 이수 정보 시스템 자동연동으로 이수확인서 수령 불필요
  - **(금연치료, 상담전화)** 문자
    - * 금연치료는 이수 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이수확인서 문자 전송 요청 필요

- **(적발보건소)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
  - ①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감면 혜택 적용 횟수 확인
  - ② **(세외수입시스템)** 감면혜택 2회까지 가능(3회부터 제도적용 불가)하므로 해당 정보 확인 후 세외수입시스템에 과태료 감면 관련 정보 입력(입력 시 체납 여부 확인)

- **(서비스제공자) 등록**
  - ※ 참여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서비스 등록
  - **(온라인교육)** 흡연자가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 등록
  - **(오프라인교육)** 보건소 담당자가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 등록
  - **(금클, 금캠)** 기존 등록절차에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신청 여부 확인 절차 추가
  - **(금연치료, 상담전화)** 기존 등록절차 진행

- **(흡연자)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 감면 신청서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 제출

- **(흡연자) 프로그램 이수**
  - **(교육)** 3차시(각 1시간)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종료 후 2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 **(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 **(적발보건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접수**
  - ※ 신청자 과태료 감면 유예기간 내 입력
  - ①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신청자 조회 후 이수 사항 입력, 부과번호 확인
  - ② **(세외수입시스템)** 이수 사항 입력 및 감면처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과태료 부과 사항	적발 일시	적발 장소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신청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 절차가 중단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3. 이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르 는 선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보건소 작성)	접수일시(보건소 작성)	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인생략

210mm×297mm[백상지(80g/㎡)]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르 는 선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보건소 작성)	접수일시(보건소 작성)	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인생략**

210mm×297mm[백상지(80g/㎡)]

5) 기타 사항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검사가 그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Ⅳ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1 금연지도원 제도 개요

운영 방향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방향

금연 단속원		금연 지도원		
담당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	상시 (기간제 근로자) +	수시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	자율 (자원봉사자 등)
• 금연구역 지정·관리 • 단속계획 수립 • 금연지도·단속원 관리 • 민원 다발 업소 집중점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제도 및 단속지원 (신고, 자료 확보 등) •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원 (공공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⑧ (이하 생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 직무범위 등을 제외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참고(붙임4)

-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조례 제정

-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인력 풀 구축
  - 상시적 단속 요원 등을 고려하여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획에 포함

  - 공공청사, 병원, 학교 등 자율 운영기관 시범 선정하여 운영

- 금연지도원 적정 인력 규모
  -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개소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20.3.17. 시행)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금연지도원 직무 및 자격 요건

◎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4)

금연지도원의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무	직무 범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 시정명령은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가능하나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시에는 담당공무원 동행 필요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 금연지도원 자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금연지도원 관련 교육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 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교육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집체 교육 실시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의무화

- 공모를 통하여 추천 또는 지원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경력 등에 관한 사항 심사 필요

- 금연지도원의 자격(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은 변동 없음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하 추천자),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하 교육이수자)

- 공모시 추천자와 아닌자를 구분·공모하여 추천자가 아닌 경우, 심사 후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완료시 지도원으로 위촉

  ※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 상 임기 연장 시 위촉 절차 생략에 관한 내용 수록되어 있는 경우, 임기연장자에 대한 공모 및 심사절차 생략 가능

  ※ 금연지도원 위촉 공모 및 심사절차 관련 '[붙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참고하여 조례 제정 권고

  ※ 자원봉사자 등 수당이 없는 형태로 근무하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공모 및 심사절차 제외 (단, 자격기준은 충족 필요)

세부절차 및 절차별 유의사항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세부절차	내용	유의사항
채용계획 수립	- 채용관련 규정 마련 및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 진행	- 지원 유의사항 전달 - 직무수행내용 공지
▼		
서류전형	- 학력, 학벌 및 신체적 조건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제거 및 직무능력 평가	- 차별적 요소 제거 - 직무관련 사항 작성 - 심사위원회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부합여부 확인
▼		
면접진행	-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에 대해 면접을 통해 실력 평가	- 심사위원회에 의한 면접 진행 - 직무관련 문항구성 - 인적사항 관련 질문 지양
▼		
합격자 결정	- 해당기관 인사기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검토 후 합격자 발표 - 채용절차 종료 후 차후 채용을 위한 점검 및 추가 조치 실시	-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사기록 서류 요구 - 채용비위 발견 시 제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V 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2 단속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금연구역 지정관리)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공동주택 금연구역)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동조 제3항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

  *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물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에 의거, 본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고발조치

3 흡연 행위에 해당하는 담배

- 담배의 정의(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담배의 종류별 구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정의를 하고,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등에서 과세부과를 위해 종류별로 구분

- 궐련,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 기타), 파이프담배, 엽궐련(시가),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 위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들이 담배로써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하여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가능하고, 담배가 아님을 흡연자 본인이 입증해야 함

담배의 종류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기타유형)
파이프담배	엽궐련(시가)	각련(롤링타바코)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

4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절차

1.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2.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PDA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시행령 별표 1의4 제3호 나목

-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4.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확인(단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되며 동기간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이수 시 50% 또는 100% 감면됨을 안내

  ※ 의견제출 기한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름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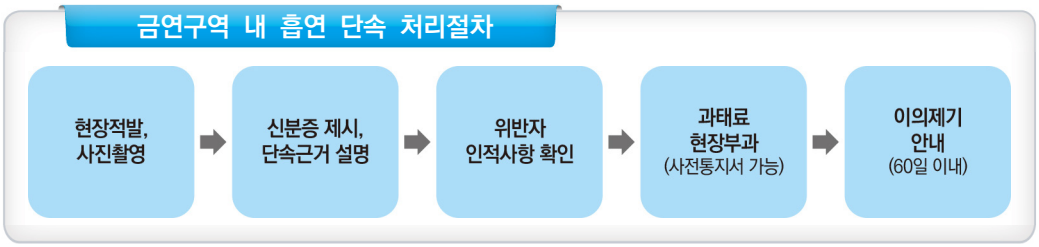

5 단속방법 예시

1.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요원 신분 소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구청 ○○○○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2.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 설명

"선생님께서는 금연구역인 OOOO에서 흡연을 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7년12월3일자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등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PDA 장비 입력(또는 위반확인서 징구)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 ⇒ 추후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됨을 안내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까지 저희 부서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이수하실 경우 50% 또는 10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맺는 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단속요원의 근무자세

1. 기본자세

- 단정한 용모
  - 단속요원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정한 용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
  - 단속요원은 단정한 용모 유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근무 중에는 규정된 제복 또는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단속 활동 시 단속요원 용모와 첫 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용모에 대해 수시 점검
- 매너 있는 태도(언어, 말씨)
  - 단속 상대방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함
  - 단속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첫 인상을 좋게 하여야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

대화 시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체크 사항

- 이야기 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운가?
- 겸허한 말씨를 사용하는가?
- 말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가?
- 태도에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는가?

2. 대화요령

-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함**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함
  -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
  -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중점사항만 이야기 함
  -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 함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음

3.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 단속 활동 시에는 누구나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함
- 적법절차 준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인권존중의 세련된 단속관행을 정착시킴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
- 폭행·협박 등의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112 신고)하여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함

붙 임

붙임 1.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 63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 68

붙임 3.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 ·· 75

붙임 4.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 76

양식 1.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획 (예시) ····· 89

양식 2.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보고서 (예시) ····· 92

양식 3. 금연구역 지도·점검표 (예시) ····· 96

양식 4. 확인서 양식 (예시) ····· 98

붙임 1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공중이용시설(법 제9조제4항 각호) 세부 범위

❊ 각종 청사(제1~5호)

각 호별 청사의 범위는 해당 기관 관련 법령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제6호, 제9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교사(건물) 외 운동장 등 시설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대학교(제7호)

대학교는 캠퍼스 내 모든 교사시설(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대학교의 기숙사도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교사의 범위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 「기술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교사시설 구분에 따름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병원, 보건소 등(제8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병원 시설(울타리) 내의 연구시설, 장례식장 등도 모두 금연시설에 포함되며, 상기 시설은 모두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금연구역이며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폐쇄병동 역시 직원 및 관계자, 기타 비흡연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당연히 흡연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활동시설(제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시설 건물 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제11호)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 시설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예시 :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금연구역에 해당되어 법의 적용을 받고, 이외의 구역은 조례의 규제를 받는 금연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학원(제1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관련시설(제14호)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은 금역구역입니다.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아니나, 만약 지자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택시 등에서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흡연이 전면 금지됨

※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제1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2호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자동차는 금연구역입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 정원 9명 이상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제16호)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법상의 연면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 하며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또한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지하 주차장 및 건축물 내부의 지상에 위치한 주차장(예: 건물 내 2층 등에 위치, 필로티 또는 옥상에 위치 등)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지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설치한 지상주차장(건물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주차장)은 미포함됩니다.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제17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 공연장은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제18호)포, 지하 상점가(제18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는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관광숙박업소(제19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소의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관광숙박업소는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신고된 시설로 카지노업이나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된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동법 제9조제4항제10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체육시설(제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축구장 및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즉 실내골프장, 당구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실내에 설치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시행일 2021.6.9.)

※ 목욕장 (제22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제23호)

2011. 6. 7.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PC방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밀폐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춘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비치할 수 없습니다. PC방에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 음식점(제24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다만 필요한 경우 흡연자를 위해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룸 형태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닌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흡연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만화대여업소(제25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성인만 이용하는 만화대여업소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제26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이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로 한정되며,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축물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지붕이 덮인 경우 지붕 밑도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보며, 건축물간 연결 통로 계단 등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 베란다, 테라스, 옥상 관련

베란다, 테라스, 옥상은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입니다. 아울러, 베란다, 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아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상의 경우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구조 및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베란다, 테라스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내 실내 흡연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에 있는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금연구역 지정 관련

Q.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 범위(예, 휴게음식점, 볼링장)

A.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법상 금연구역 지정의무가 제외된 시설이 혼재하여 있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Q. 군대, KTX 역사, 지자체 공사·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사회적기업·단체 입주시설, 문화회관, 나눔방, 협동조합),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청사 해당 여부

A.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단지 정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지 등을 고려해야함. 단지 정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이유만으로 청사로 볼 수 없음

* 예컨대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공공단체가 국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이를 정부의 '청사'라고 부를 수 없음

- 군부대 : 청사로 보기 어려우나 국방부훈령인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3항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부대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금역구역 지정 대상을 판단하면 됨
- 코레일 역사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코레일 역사는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에 해당하여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됨
-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시설 :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사무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예컨대,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일정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관리하면서(예컨대 관리·지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상주) 중소기업 지원·인큐베이팅 등의 용도로 그 공간 일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입주·사용하게 한다면 해당 시설을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청사로 볼 여지가 있음

* 반면에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보증금·차임 등의 비용만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직접 일정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가 소유 건물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유상·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지자체 자신은 그 건물에서 그 어떤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청사로 볼 수 없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등 : 해당 건물·시설을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직접 관리한다면 설사 언제나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설이 지역주민·단체 등 제3자의 공연·문화활동 등에 의해 사용될지라도 문화회관은 지자체의 청사로 보아야 함

- 민간위탁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 정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 또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처리주체가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은 상기 설명과 같이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청사에 해당하지 않음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듦(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설치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휴게음식점 등록이 되어 있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불법 도로 점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봐야 함

Q. 성큰가든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성큰가든이라 함은 폐쇄적인 지하공간에 채광 및 개방감을 부여함으로써 지하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고급스럽게 개선 ex. 코엑스 등)

A.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에 성큰가든이 속하는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Q. 전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금연구역 지정 여부

A.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봄이 타당함.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른 시장의 경우 법적 금연구역은 아님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함

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단독 시설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듦. 다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부속시설인 경우 청사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으로 봄이 타당함. 대규모점포에 속한 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봄(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공영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
※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Q.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 포함 여부

A.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됨

-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제2조 제3호)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점포의 집단을 일체로 보아 이에 대해 이 법 내에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취급 내지 규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건물이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려면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함
- 건물이 복수인 경우 이처럼 지하도나 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통로로 인해 비로소 여러 건물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하도나 지상통로를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보아야함

Q. 실내 설치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지?

A.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으로 규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실내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9.1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시행일 2021.6.9.)

Q. 음식점의 영업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는지?

A.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면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적용

즉 영업신고 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

Q.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워 금연구역으로 지정
- 건축물 대장에 따른 연면적(건축물 경계 內)을 기준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오피스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으로 해당 용도의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Q.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의 차양막, 비가림막 등의 하부의 금연구역 해당 여부

A. 차양막(캐노피·비가림막·어닝 등)의 하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 법 제9조 제4항 제16호는 일정한 건축물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4.에서 본 것처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함
-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공작물일 것,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 및 기둥·벽이 있을 것이라는 기본개념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질의에 나타난 가설의 차양막, 캐노피, 비가림막, 어닝 등은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지붕의 연장인 처마 자체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아래의 빈 공간을 실내, 즉 건축물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건축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본건에서 문제된 가설 차양막 등의 하부 공간을 법 제9조 제4항 제16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Q.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의 기준

A.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의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느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전체 1,000세대가 입주 가능한 공동주택의 실 거주 세대가 800세대인 경우 800세대 중 2분의 1이상 즉 400세대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 흡연실의 설치

Q.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의 흡연부스 설치 요구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함

Q. 흡연실(흡연부스)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시설(자판기 등) 설치가능 여부

A.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시설은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의자,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

Q. 실내 흡연실(흡연부스)제작 시 실외로 연결된 환풍시설을 반드시 설치 해야하는가? (일부 흡연실 제작업체 등에서 설치 장비만으로 내부환기(자정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A.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다항 3호에 따라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WHO FCTC 제8조 이행가이드라인 제6호(원칙1) 中**
>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 환기, 공기여과, 지정된 흡연구역(별도의 환기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의 접근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졌으며,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 금연지도·단속

Q.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Q. 전자담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 가능,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 공연 표현의 일부로 흡연 장면이 필요한 경우 대체용품을 개발하거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토록 안내

※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단속과정에서 종종발생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

Q. 금연표지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흡연과태료 부과여부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Q.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A.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계도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 되는 경우 관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확인서 징구 등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 흡연관련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 이용자가 흡연구역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도 및 계도를 통해 흡연물품을 제거토록 함

Q.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 동 시설구조 또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 다만, 옥상 및 필로티 구조에도 흡연실 설치는 가능

Q.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자진납부감경 가능 여부?

A.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Q.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한가?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거듭하여 가능함(위 사유의 경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Q. 금연구역 내에서 직접적으로 피우지는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놓은 경우 적발이 가능한가?

A.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가 어려움

* WHO FCTC 제8조 이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여 정의해야함'

Q.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적발 기준은 무엇인가?

A. 전원을 작동하여 액상을 기화시킴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시점(액상형 등) 혹은 전원을 작동하여 담배를 가열함으로써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시점(궐련형 등)에 과태료 부과

*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증기가 공중으로 배출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로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Q. 경찰 및 선생님 등이 흡연자를 확인하여 보건소로 이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 흡연위반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 위반자에 사실관계 재확인 및 의견청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가능

Q.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 민원 및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가능

- 민원인 신고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기 시달[건강증진과-3692호(2013. 7.2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 위반사실 확인 조사: 당사자(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
- 관련사항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 처리

Q. 금연지도·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사진 촬영 거부 시 촬영 가능 여부

A. 개인정보보호범 제15조제1항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촬영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Q. 금연 지도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 제공 시 조치방법은?

A. 사전 교육시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지

>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기간제 근로자나 타 업무 공무원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가능한가?

A.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가능하며, 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함

※ 자발적 금연지도원은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 없음

Q.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지정위반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A.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4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상태 등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공정한 행정 절차를 위해 확인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는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단독으로 업무수행 가능함

※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Q.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동의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서명의 인증 여부?

A. 법적 요건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이후 과태료(의무)가 따르는 사항으로 세대주 서명을 원칙으로 함

* 일과시간 세대주가 집에 없어 서명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으나 신청 동의서 양식을 변경을 통해 세대별 1장씩 양식을 줄 수 있게 되어 시간을 두고 세대주가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

※ [참고] 개정「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3 금연구역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

구 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비 고
1. 금연구역 지정	① 관계인에 금연구역 지정 알림(공문 등) • 금연구역 범위, 흡연실 위치, 관리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등 안내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 스티커, 표지판 등 설치 (모든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공용 지역에 부착) • 게시판, 알림판,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 * 필요 시 흡연실 위치도 알림 ③ 필요 시 흡연실 설치 · 운영 가능	
2. 금연구역 관리	① 금연관리자 1인 지정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유지 • 흡연실 설치 기준 유지 관리 • 이용자에 대한 홍보(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 • 시설 관계자(종사자, 임차인, 소유인) 및 관리요원(경비, 청소원 등)에 대한 교육 ②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감시 · 계도 • 취약지역 및 주 이용시간 점검 및 안내방송 • 종사자 흡연 적발 시 자체 재제 실시(벌당직, 벌금, 인사조치 등) • 이용자 흡연 적발 시 재제 및 계도 ③ 금연환경 조성(재떨이 등 흡연유인 시설제거, 취약구역 발굴 및 관리 등)	

붙임 4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1)]

2021. . .

○ ○ 시·도

1)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은 조례의 예시(안)으로써 지자체 환경 및 법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음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 규제심사 :

000 조례 제2021 -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위촉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①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위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촉 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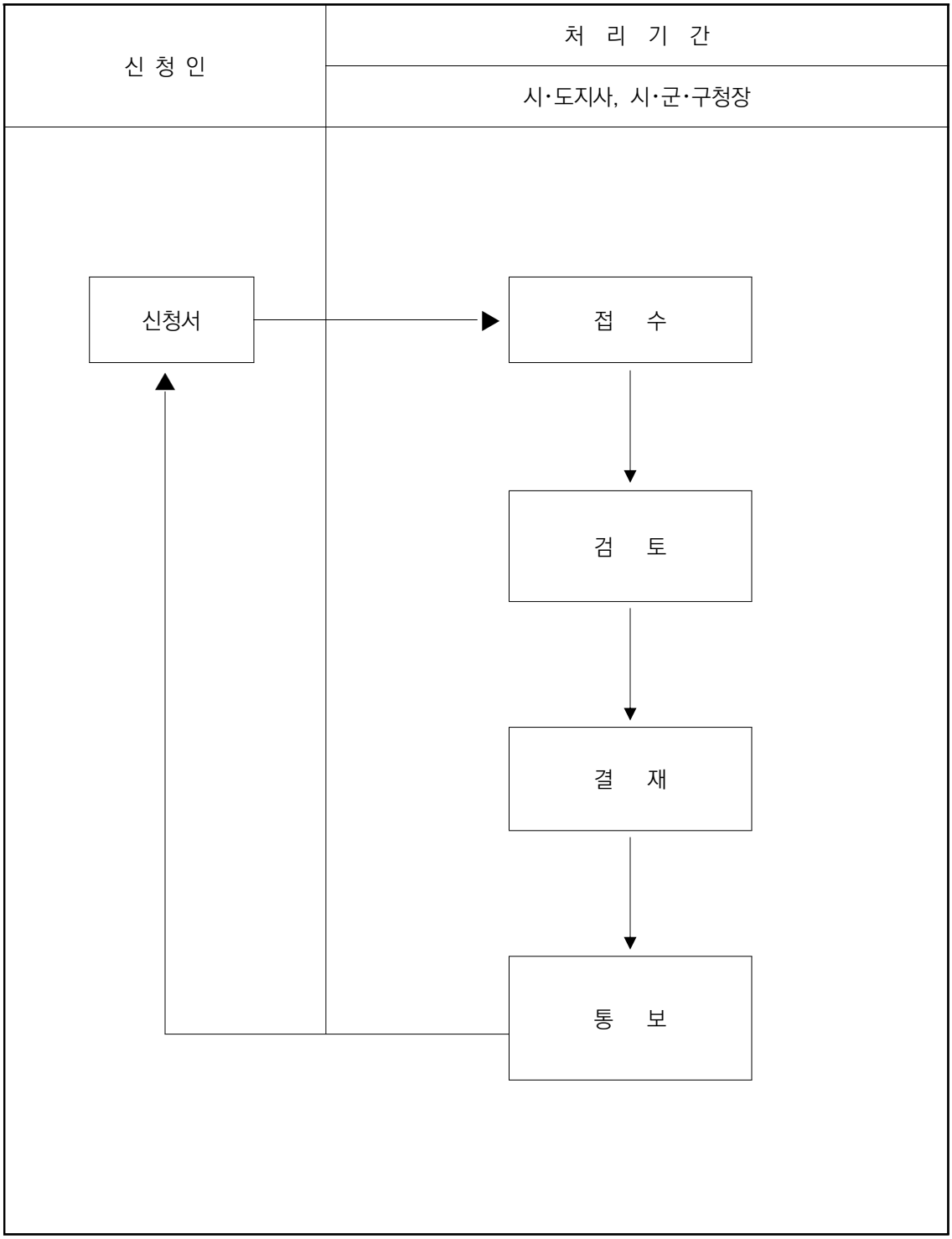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 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60㎜ × 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1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획 (예시)

1 추진개요

1. 목적 및 현황

-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그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금연구역 현황(필요시 별첨)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목적 제시
◇ 전년도 지도 단속 현황 및 문제점 제시
  * 인력, 예산, 금연구역 현황 제시
◇ 금년 추가된 금연구역 현황 제시

2. 2021년 추진방향

- 기본방향 (예시)

- 전체 점검시설 대비 00.0% 점검 실시
- 신규 확대된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점검 방향
-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방안
- 효과적 지도·점검을 위한 기본 전략
  * 대상별 지도점검 시간 설정, 병원 등 공공시설의 경우 금연 MOU 체결을 통해 지도점검 제외, PC방 등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등
  * 분기별 1회는 시군구별 교차 점검 실시

[작성 가이드라인]

◇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설정**
- 금연구역 대비 점검률
- 핵심 중점 점검 사항
- 지도단속 시기의 적정성
-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기본 전략

인력 운영 방향

- 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단속인력 (공무원)	지도·계도·홍보인력(금연지도원 등)		
		금연지도원(전환)	자 율*	상 시**
총00명	*00명*	*00명* (단독 단속 권한이 없는 지도·단속 지원 인력)	*00명* 1) 청소년유해감시단, 식품위생감시단 등 기존 유사단속인력 2) 대규모 시설 등 상시 관리 가능한 시설 3) 무료자원봉사 가능자	*총00명*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위촉 운영할 인원

* 자율 :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기한 내에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금연지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위촉·운영(신청에 의한 경우)

☞ 별도 교육 및 실적 보고 계획 수립 필요

** 상시 :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인력으로 공고 등을 통해 관련단체 추천 및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 기 투입 인력 및 추가 인력 확보 계획
- 도내 타 부처 등 기타 인력 투입 계획
-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 활용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타 인력 투입을 위한 업무 협조 등 노력(회의, 간담회 등)
◇ 자원봉사 등 민간 인력 활용 노력(회의, 간담회 등)

홍보 방향

- 신규 확대 금연시설에 대한 홍보 방안
- 금연 지도 단속 연간 계획에 대한 홍보 방안

[작성 가이드라인]

◇ 홍보 관련 예산
◇ 홍보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제시

2 세부 지도·단속 계획 (월별 작성)

세부 추진 목표

- 금연구역 대상 점검률/점검건수(야간 점검 건수)
- 조치 계획

월간 추진 계획

- 월간 세부 추진 내용

구 분	중점 대상	점검시간	인력투입	홍보계획
계				
1월	*음식점 및 흡연실*	*야간집중*	*월 00명(누계) 1회 평균(명) 추가 투입인력(명)*	*스티커 00장 반상회보 안내 등*
2월	*음식점 및 흡연실*	*야간집중*	*월 00명(누계) 1회 평균(명) 추가 투입인력(명)*	
3월	*음식점 청소년 시설*			*캠페인 개최*
4월	*아동 청소년 시설*			
5월	*터미널, 공공청사*			
6월	*병원, 도서관 등*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타 금연 환경 조성 추진 계획

• 관련 기관 MOU 체결(~ 3월)

* 주요내용

3 세부 지도·단속 계획(시·군·구별)

(특화된 부분만 요약 작성)

양식 2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보고서 (예시)

(○○시도)

1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월 보고사항)

1)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시도 및 보건소	조례명칭	제/개정 구분	조례로 정한 과태료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20 . .	20 . .	20 . .

2)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현황

시도 및 보건소	조례명칭	제/개정 구분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20 . .	20 . .	20 . .

3) 금연시설

◉ 공중이용시설 현황[2)]

(단위 : 개소)

구분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총계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2)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등 현황
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 2회 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
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 뒷장에 계속

구분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 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공동주택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조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총계			
(예시) 공원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00거리			
00광장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현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공동주택명	총 세대수	지정범위								신청일	지정일	주소	상세주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찬성 세대수	지정 여부	찬성 세대수	지정 여부	찬성 세대수	지정 여부	찬성 세대수	지정 여부				
			Y/N		Y/N		Y/N		Y/N	2021-00-00	2021-00-00		동별 구분이 있는 경우 작성

- 공동주택 금연구역 해제현황

공동주택명	총 세대수	해제범위								신청일	해제일	주소	상세주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찬성 세대수	해제 여부	찬성 세대수	해제 여부	찬성 세대수	해제 여부	찬성 세대수	해제 여부				
			Y/N		Y/N		Y/N		Y/N	2021-00-00	2021-00-00		동별 구분이 있는 경우 작성

위반사항 조치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제9조제9항 제1호 및 제2호)

구분		금연시설 지정위반				흡연실					흡연실 시설기준위반			
		주의·경고	과태료		고발	설치현황		실외 흡연구역 개소수	흡연부스 개소수		주의·경고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설치	미설치		실내	실외		건수	금액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시설														
공동주택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
**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
※ 시설 현황 양식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조례시설 시설종류별로 작성

- 금연시설 흡연 금지 위반(제9조제8항)

구분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주의·지도	과태료10만원		주의·지도	과태료		조례로 정한 과태료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시설								
공동주택								

※ 시설 현황 양식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조례시설 시설종류별로 작성

4) 금연구역 외 실외 흡연구역 현황/담배자동판매기

금연구역 외 흡연구역 현황

구분	흡연실				
	설치현황		실외 흡연구역 개소수	흡연부스 개소수	
	설치	미설치		실내	실외

* (실외 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 흡연구역
**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
※ 담배자동판매기는 반기 보고사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관리 현황

구분	시설현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현황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된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된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된 중이용시설중 흡연실													

5)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업소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구분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위반사항 조치	
		주의·경고	고발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양식 3 금연구역 지도·점검표 (예시)

금연구역 지도·점검표			
시설구분		관리자	(확인)
명칭 및 상호	□ 폐업	연락처	☎
건물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관리		
금연구역 지정·관리	공중이용시설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 대형, □ 실내)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음식점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조례에 따른 시설	
	흡연실 관리	□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과태료 원)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 미설치 □ 실내 설치 (설치장소) □ 실외 설치 (설치장소)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 (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금연구역 흡연위반	□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금연구역 외 흡연실 지정·관리		
금연구역 외 흡연실 지정·관리	흡연실 관리	□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 미설치 □ 설치 (설치장소)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20 . . .

점검자 (인)

【작성시 유의사항】

1. 체크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관리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함
   (관리자 서명이 없을 경우 점검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폐업된 경우 점검표 상단에 〈폐업〉이라고 표기하고 상호 및 주소도 함께 기재
3. 흡연실 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고 흡연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함
4. 금연구역 운영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0구 보건소 00과 금연관리팀(전화번호)으로 안내 요망

양식 4 확인서 양식 (예시)

□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확 인 서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
주 소 : OO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0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00월 00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 . 00. 00
2. 위반장소 : OOOO(OO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 제34조 제3항
4. 위반행위(내용)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5. 특이사항(해당 시) : 신분증 없음. 위반자 서명 거부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OO시 OO구청장 귀하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확 인 서

상 호 명 : XX PC방, YY음식점, ZZ빌딩 등
소 재 지 : OO시 OO구 OO동 ***-**
확 인 자 : 홍 길 동
관계(직급)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소장 등
상 호 명 : 00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00월 00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0 . 00. 00
2. 위반장소 : 상 동 / OO시 OO구 OO동 ***-**
3. 근거법률 조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9항, 제34조 제1항제2호
4. 위반행위(내용) : 1) 금연구역을 지정하지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시정기간 : 20 . . . ~ 20 . . . (일)
6. 특이사항(해당 시) : 신분증 없음. 위반자 서명 거부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OO시 OO구청장 귀하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발간종류	정책보고서
관리번호	정책-03-2020-026-10
등 록 일	2020년 12월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 행 인	조인성
집 필 진	김수진, 김지연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전화번호	02-3781-3500
홈페이지	www.khealth.or.kr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 ☎ 02-2079-9200